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703

발의연월일: 2021. 3. 11.

발 의 자:이종배·태영호·정진석

김선교・박대수・서범수

성일종 · 김은혜 · 추경호

이종성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상임이사 및 상임감사의 재산등록 및 등록재산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부동산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업무처리 중 알게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바, 부동산 관련 공직자의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함.

이에 토지·주택 등 개발사업을 총괄하는 국토부는 공무원 전원이, 부동산정책 집행 관련 공공기관의 경우 3급 이상 직원이 부동산에 관한 재산을 등록기관에 등록하도록 하는 한편, 국토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은 등록된 부동산에 관한 재산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관리·방지하 고자 함(안 제3조제2항, 제10조제1항 등).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4조제2항제1호의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의 등록과 그 등록사항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6조의3부터 제6조의5까지,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 1.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제1항에 따른 등록의무자는 제외한다)
-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3급 이상의 직원
- 3.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3급 이상 의 직원
- 4.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의 3급 이상의 직원
-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3급 이상의 직원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9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에 한정하여 재산을 공개하여야한다.

9의2. 국토교통부 소속 2급, 3급 상당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동산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동산 등록의무가 발생한 공직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동산공개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동산 공개의무가 발생한 공직자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등록의무자) ① (생 략)	제3조(등록의무자) ① (현행과 같
	<u>♥</u>)
<u><신 설></u>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4조제2항제1호의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
	우 해당 재산의 등록과 그 등
	록사항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4
	조부터 제6조까지, 제6조의3부
	<u>터 제6조의5까지, 제7조, 제8조,</u>
	제8조의2, 제12조부터 제14조까
	지,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u> 준용한다.</u>
	1.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제1
	항에 따른 등록의무자는 제외
	<u>한다)</u>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3급
	이상의 직원
	3.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
	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3급 이상의 직원
	4.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① 공직 저 자윤리위원회는 관할 등록의무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제6조에 따른 변동사항신고내용을 등록기간 또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한다. <단서 신설>

1. ~ 9. (생 략) <u><신 설></u>

10. ~ 13. (생략)

<u> 직원</u>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	
방공기업 중 주택사업, 토지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	
사 및 지방공단의 3급 이상의	
 직원	
 네10조(등록재산의 공개) ①	
<u>다만, 제9호의2에 해</u>	
당하는 사람은 제3조제2항제1호	
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및 전세권에 한정하여	
재산을 공개하여야 한다.	
1. ~ 9. (현행과 같음)	
9의2. 국토교통부 소속 2급, 3	
급 상당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10. ~ 13. (현행과 같음)	

한국부동산워의 3급 이상의